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 선고 2019가단2171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장태관, 김수정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서주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김혜진, 이미경, 김유리

변론 종결 2021. 2. 18.

판결 선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34,381,2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81,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 11. 30. C회사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D으로부터 대출받을 2억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9. 11. 29.,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정한 보증약정을 하고, 기보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D은 위 기보보증서를 담보로, 2016. 12. 6. B에게 2억 원을 대출기한 2019. 11.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B은 2019. 1. 8.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D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9. 5. 28.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171,804,8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9차전23810호로 구상금청구의 독촉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4. 'B은 원고에게 170,952,329원 및 그중 170,684,757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7. 6. 확정되었다.

마. 피고와 B은 1987. 1. 25. 혼인하였다. 피고와 B은 2018. 12. 10.경 B의 음주, 외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상호 이혼하기로 하면서, B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출을 포함하여 양도하며, (주)E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모든 금융 채무를 갚고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2018. 12. 18. 위 이혼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2018. 12. 17.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B은 2019. 9. 1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65,618,777원을 지급하고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는바, 이는 채무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12. 17.자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원에서 말소된 D의 피담보채권액인 65,618,777원을 공제한 34,381,2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381,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E에 대한 605,281,084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과 보증사고 발생 사이에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 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와 B은 실제 이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다. 2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B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에 있어 B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사정이 엿보인다. 3 원고도 인정하듯이 피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것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데 그로 인한 피고의 이득은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B은 현재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주식회사 E에 대한 489,560,349원 이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4 B과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도 30년을 초과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B과 피고의 자녀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정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집합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진주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스라브지붕 15층공동주택(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진주시 대 7010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41.3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0103.5분의 32.42

